#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실무협의체
# (수행기관 정례회의)

2022. 3. 23. ~ 24.

부산광역지원기관
부산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Comprehensive Support Center for the Elderly Living Alone

# 목 차


Ⅰ.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이해 ····· 1

1 서비스 계획 수립방법 및 유의사항
2 서비스 제공 및 유의사항
3 수행기관 역할
4 종사자 채용 및 복무관리
5 2022년 노인돌봄서비스 관련 주요 FAQ
6 종사자 채용 및 복무관리
7 2022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주요 변경사항 안내
8 2022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관련 주요 FAQ

Ⅱ. 사업 관련 필수 숙지 및 확인필요 사항 ····· 11

1 업무관련 시스템별 사용자 권한 안내
2 모인우리Web 기관 현황관리
3 대상자 특이사항 발생 시 보고체계 안내
4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업무연속성계획(BCP) 가이드라인 안내

Ⅲ. 사업 안내사항 (중앙) ····· 21

1 2022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 직무교육 안내
2 수행인력 역량강화교육 (중앙주최)
3 종사자 심리 · 정서지원사업 관련 주요안내 (중앙주최)
4 2022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노무자문 지원사업 안내
5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노무자문 교육 및 회의
6 조선일보와 함께하는 '독거노인 신문 안부안심사업'
7 한겨레신문사와 함께하는 '독거노인 안부 확인사업'
8 사랑잇는 전화
9 한국사회복지공제회 '노인맞춤돌봄종합공제' 보장담보 추가 안내

Ⅳ. 사업 안내사항 (부산광역) ····· 30

1 수행기관 현장모니터링
2 수행기관 서비스 모니터링
3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실무협의체
4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인력 역량강화교육 (부산광역주최)
5 특화서비스 수행기관 지원사업
6 나눔활성화사업 (부산시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주최)
7 서비스지원사업 (부산시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주최)
8 안부안심콜서비스 (부산시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주최)

# Ⅰ.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이해

## 1 목적

○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 노인의 기능·건강 유지 및 악화 예방

## 2 서비스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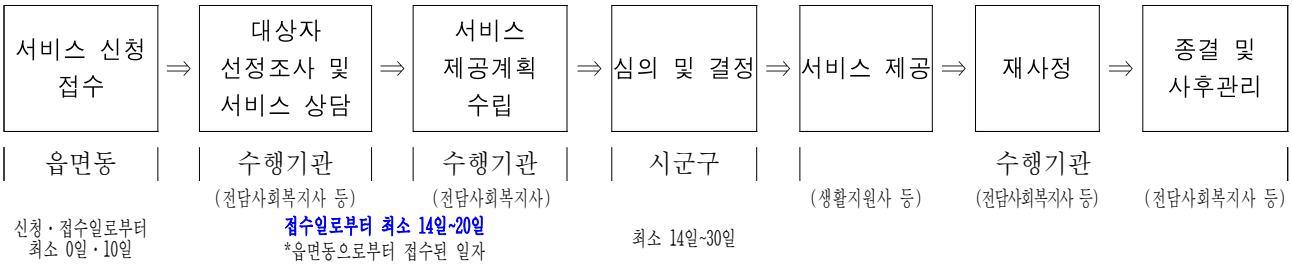
○ 만 65세 이상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중복사업에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독거·조손·고령부부 가구나 신체적 기능 저하 및 정신적 어려움(인지저하, 우울감 등), 고독사 및 자살위험이 높은 노인 등
- 단, 시장·군수·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신청 가능

**<제외대상-유사중복사업해당자>**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단, 장기요양 등급 유효기간 만료자의 경우 신청 가능)**
②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이용자(수급자격 있는 경우 포함)
③ 국가보훈처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
④ 기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유사한 재가서비스
* 지자체는 사업의 특성, 실질적 제공내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별 유사중복 여부를 사전에 결정

## 3 서비스 제공절차




○ 대상자 선정조사를 통해 사회-신체-정신영역의 돌봄필요도에 따라 중점돌봄군, 일반돌봄군, 특화서비스대상(은둔형, 우울형), 사후관리대상으로 구분하여 서비스를 제공

- 서비스 제공시간은 대상자의 서비스 필요도에 따라 다르게 결정됨

  * 개인별 돌봄욕구·필요정도에 따라 서비스 내용, 제공시간, 제공주기 등 결정

**<대상자 구분>**

| | |
|---|---|
| **중점돌봄군** | **신체적인 기능 제한으로 일상생활지원 필요가 큰 대상**<br>• 월 16시간 이상 40시간 미만의 직접서비스, 주기적인 가사지원서비스 제공<br>• (필요시) 연계서비스 및 특화서비스 제공 |
| **일반돌봄군** | **사회적인 관계 단절 및 일상생활의 어려움으로 돌봄 필요가 있는 대상**<br>• 월 16시간 미만의 직접서비스 제공<br>• 특수한 상황(수술·골절 등)에 한하여 가사지원서비스 한시적 제공 가능<br>* 가사지원서비스의 필요가 길어질 경우 중점돌봄군으로 변경 필요<br>• (필요시) 연계서비스 및 특화서비스 제공 |
| **특화서비스 대상** | **사회관계 단절, 우울증 등으로 집중적인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 |
| **사후관리 대상** | **본 사업(중점돌봄군, 일반돌봄군) 종결자 중 사후관리가 필요한 자** |

○ 서비스 제공기간

- 시·군·구 서비스 이용 자격 승인 익일로부터 1년

  * 서비스 제공기간은 특이한 사유가 없는 경우 1년으로 함

  ** 노인맞춤돌봄 특화서비스의 경우, 서비스개시일로부터 1년

## 4 추진체계별 역할

※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을 적용받는 것이 바람직함(고용노동부)

○ 수행인력 채용·교육 및 관리

- 수행기관장은 전담사회복지사 및 생활지원사에게 신분증을 발급하고 신분증 발급 대장을 비치•관리하여야 함
- 신분증을 발급받은 종사자가 퇴직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납받아 폐기 처분하여야 함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추진실적 관리

- 사업 추진현황을 전산화된 자료로 관리(서비스추진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통계현황을 산출할 수 있어야 함)

○ 수행기관 간 실무협의회 구성·운영(분기별 1회 이상)

○ 특화서비스 제공을 위한 수행기관과의 상호 협력체계 구축

- 이용자 서비스 제공 방안(송영, 물리적 공간 등) 논의 등
- 특화서비스 수행기관에서 본인이 담당하는 서비스 이용자 관련 업무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소속 수행기관의 특화서비스 수행 여부에 상관없이 서비스 제공을 지원할 수 있음(생활지원사)

○ 안전사고, 사망, 위기예방사례 등 대상자 특이사항 발생 시에는 해당 시군구, 광역지원기관, 보건복지부(중앙노인돌봄지원기관)에 즉시 사고경위 등 보고 실시

* <서식 제11호>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특이사항 보고

○ 대상자 보호대책(혹한기, 혹서기 등) 기간 중 사업 대상자 보호 및 지원 강화

- 지역 내 보건복지서비스 연계 추진 및 비상연락체계 구축
- 재난상황 발생 시 사업 대상자에 대한 신속한 안전확인 및 조치

○ 노인맞춤돌봄협의체 참석

○ 장기요양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수행기관의 경우 시군구에 분기별 1회 방문요양급여 수급자 현황 보고

## 5 노인맞춤돌봄 특화서비스사업 안내

○ **(목적)** 사회적 고립과 우울 위험이 높은 취약노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사례관리 제공을 통한 고독사 및 자살예방

○ **(추진방향)**

- 지역 내 공공 및 민간 네트워크를 활용한 고독사 및 자살위험군 발굴 체계 구축
- 복지관, 경로당, 보건소, 병원, 자살예방센터 등 지역사회자원과 연계
-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회적 관계 형성을 지원하여 지속가능한 상호돌봄체계 구축

○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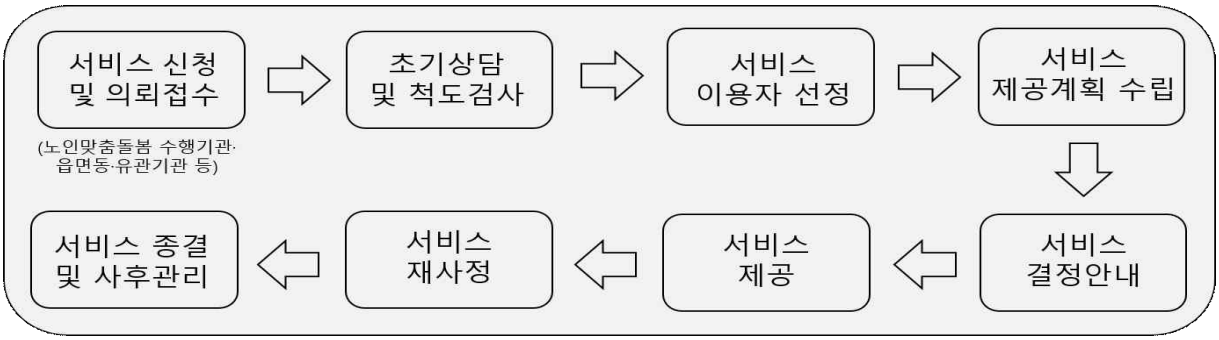
**· 가족, 이웃 등과의 접촉이 거의 없어 고독사 및 자살위험이 높은 만 65세 이상 노인**

(고독사 및 자살위험이 현저히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만60세 이상 하향 조정 가능)

**· 참여자 특성에 따라 대상자 군과 개입 방법 달리함**

| 구분 | 은둔형 | 우울형 |
|---|---|---|
| 대상 | 가족, 이웃 등과 관계가 단절되어 있으면서, 민.관의 복지지원 및 사회안전망과 연결되지 않은 만 65세 이상의 자 | 정신건강 문제로 인해 일상생활 수행의 어려움을 겪거나, 가족.이웃 등과의 관계 축소 등으로 자살, 고독사 위험이 높은 만65세 이상의 자 |
| 개입방법 | 1:1 사례관리 | 1:1 사례관리 또는 집단 활동 |

○ **(제공절차)**



○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

| 구분 | 내용 |
|---|---|
| 서비스 신청권자 | · 특화서비스를 희망하는 노인(이하 '신청자')<br>· 신청자의 친족*(이하 '대리 신청자')<br>*** 친족: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 서비스 의뢰자 |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br>· 읍·면·동 공무원<br>· 지역사회 유관기관(이하 '의뢰기관') |
| 신청방법 | **(공통) <서식 제17호>** 특화서비스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제출<br>* **<서식 제17호>** 붙임1 참조<br>* 관련 양식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서식 p234**' 확인 가능<br>(※ http://www.lovesenior051.co.kr/>게시판>공지사항<br>'2022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지침)' 게시물에서 양식 다운로드 가능) |

## 6 종사자 채용 및 복무관리

○ **수행기관에서는 종사자 채용 및 근로계약 등 노무관리에 있어서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령 준수 필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을 위한 노무가이드 참고)

- 특히, 연초에는 종사자 채용과 관련하여 종사자와의 근로계약서 작성과 취업규칙*을 마련하고 관련하여 종사자에게 안내가 필요함**

* 취업규칙(관리규정)은 사규, 인사규정, 복무규정, 퇴직금규정, 지침, 세칙 등 그 명칭과 관계없이 내용이 근로조건이나 복무규율에 관한 것이라면 취업규칙에 해당함.

** 노무가이드 내 예시를 참고하여 수행기관의 규모나 업무 특성에 맞게 수정·활용해야 함. (기존 수행기관의 취업규칙을 수정·보완하거나, 별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음)

## 7 2022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주요 변경사항 안내

| 구분 | 2021 | 2022 | 참고사항 |
|---|---|---|---|
| 대상자 선정조사 시기 | 신청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 신청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 |
| 재사정 | 서비스 제공 전 또는 제공 과정에서 대상자의 요청이나 전담사회복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br>(단, 서비스 제공기간 종료 직전 3개월 동안은 필히 실시하여야 함)<br>※이용자의 상태(환경, 건강, 정서 등)의 변화가 없을 경우 1회에 한하여 재사정 없이 서비스 제공기간 연장 가능(시군구 승인 필요) | 서비스 제공 전 또는 제공 과정에서 대상자의 요청이나 전담사회복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br>(최소 연 1회 이상) | *오류정정 등 서비스 제공 계획 변경만 필요한 경우, 대상자 선정조사 및 서비스 상담을 생략할 수 있음<br>→ 재사정 진행 후, 오류정정 등 서비스 제공 계획 변경만 필요한 경우 해당 |
| 예산편성 기준 | - 인건비<br>- 운영비: 수용비 및 수수료, 공공요금 중 우편료와 전화요금, 차량유류비, 출장여비, 회의비, 홍보비, 교육비, 배상·상해보험료<br>- 사업비: 직접서비스사업비, 연계서비스사업비, 특화서비스사업비 | - 인건비(동일)<br>- 운영비: 수용비 및 수수료(사무용품 구입, 인쇄비, 수수료 등), 공공요금(우편료, 전화요금), 차량비(차량유류대, 차량소모품비), 여비, 회의비, 홍보비, 배상보험료, 회계감사비(100만원 내), 회계검증비(50만원 내), 복리후생수당<br>- 사업비: 직접서비스사업비, 연계서비스사업비, 특화서비스사업비, 교육사업비<br>- 전체 예산의 3% 이상으로 사업비 편성 | *복리후생수당의 경우 2021년 복지부 추가안내사항에 따라 수행인력당 연 6~10만원 이내 수당을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으며, 이외 추가적인 복리후생을 위한 경비는 지방비(국고보조금 아닌 별도 지방비)로 지원 가능.<br>지침 또는 별도 공문으로 안내되지 않은 수당에 대해서는 국고보조금으로 편성 불가<br>**자산취득비 사용 불가<br>***교육비의 경우 법정의무교육,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에 해당하는 교육비 사용 불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관련 교육비로 사용 가능 |

| 구분 | 2021 | 2022 | 참고사항 |
|---|---|---|---|
| 서비스 제공 관련 (장기부재) | 병원입원, 여행 및 친지방문 등 1주 이상 3개월 미만 장기부재로 인해 서비스 제공 중지가 필요한 이용자 발생할 경우 전담사회복지사에게 보고, 노인맞춤돌봄시스템에 입력하여 '미이용자' 처리 | 병원입원, 여행 및 친지 방문 등 1주 이상 3개월 미만 장기간 부재, 이용자 요청(건강상의 이유 및 코로나19 등 감염우려)으로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 중지를 직접 요청하는 경우 <서식 제9호>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서비스 중지 요청서 작성, 노인맞춤돌봄시스템 입력하여 '서비스 중지처리' | |
| 서비스 종결 | 노인맞춤돌봄협의체 심의 대상 | 노인맞춤돌봄협의체 심의 대상(동일)<br>※수행인력의 안전이 위협되어 서비스 종결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의 생략 가능 | |
| 서식 관련 | - <서식 제7호-1>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제공 안내서 | - <서식 제7-1호>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제공 안내 및 동의서<br>- <서식 제9호> 서비스 중지 신청서<br>- 서식 제9호 신설에 따른 서식번호 변경(서식 제10-1호~서식 제31호) | *<서식 제7-1호> 변경된 양식으로 구비 필요, 대상자 이관 등으로 수행기관 변경 시 변경된 수행기관에서 재작성 필요<br>작성된 안내 및 동의서는 기관, 이용자 각 1부씩 보관<br>**<서식 제9호> 갑작스러운 병원입원, 친지방문 등으로 서비스 중지 신청서 작성이 어려운 경우 대리신청을 통한 신청서 작성 필요(대리 신청인: 가족, 친족,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및 기타 관계인 등으로 생활지원사 또는 전담사회복지사 서명 가능) |

## 8 2022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관련 주요 FAQ

□ 서비스 신청

| Q1. 장기요양등급 판정이력이 존재하나, 이후 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을 받은 경우 신청 가능한가요? |
|---|
| ■ 신청 가능합니다.<br>장기요양등급 판정 이후에 상태 호전 등으로 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을 받은 경우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등급포기자의 경우 서비스 신청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
| **Q2. 장기요양등급 판정이력이 존재한, 이후 장기요양등급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신청 가능한가요?** |
| ■ 신청 가능합니다.<br>2022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 개정에 따라, 장기요양등급 판정 이후 등급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br>■ 단, 등급포기자의 경우 기존 등급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 **Q3.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 거주지가 상이한 경우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청 및 이용이 불가한가요?** |
| ■ 불가합니다.<br>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서비스 신청 및 이용이 가능합니다. |

## □ 서비스 제공 및 사업관리

**Q1. 경력이 4년 미만인 전담사회복지사가 근로계약기간 중 경력이 4년이상이 될 경우 상승된 인건비로 변경하여 지급할 수 있나요?**

- 근로계약 시점 기준 경력으로 근로계약기간의 임금이 결정되며 계약연장 또는 공개채용을 통한 재계약 시 경력 재산정에 따라 임금이 다시 결정됩니다.

**Q2. 서비스 중지 도중 '중지 기간'이 변동될 경우 <서식 제9호>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중지 신청서를 재작성해야 하나요?**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중지는 이용자의 상황 및 신청에 의거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용자의 상황 변동에 따라 중지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새로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징구하셔야 합니다.

**Q3. 중점돌봄군에 대해 목욕서비스 제공이 가능한가요?**

-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셀프케어가 적용될 수 있도록 이용자가 스스로 할 수 없는 행위를 중심으로 지원하는 것을 제공방향으로 삼고 있습니다. 가사지원서비스는 이용자의 집에서 식사를 거르지 않게 하고, 깨끗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청소와 정리정돈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로 신체기능지원서비스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Q4.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제공결과 등록을 위해 시스템 이용 시 '노인맞춤돌봄시스템'을 필히 사용하여야 하나요?**

- 아닙니다.
  수행기관은 서비스 제공결과를 철저하게 관리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관리 방안은 시스템 사용, 수기 관리의 방법이 있습니다.
- 단, '노인맞춤돌봄시스템'의 경우 서비스 신청-선정, 재사정의 기능은 의무 사용입니다.

**Q5.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결 대상자에 대해 사후관리를 필히 하여야 하나요?**

- 아닙니다.
  사후관리 대상은 종결자 중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정하시면 됩니다.
- 사후관리 방법 및 주기는 대상자의 상황에 따라 계획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Q6. 장기요양등급 판정으로 자격상실 시 종결신청서를 징구해야 하나요?**

- 아닙니다.
  장기요양등급 판정의 경우 직권종결처리가 가능합니다. '직권종결처리'란 이용자의 신청 없이 수행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종결절차를 수행할 수 있음을 말합니다.

**Q7. 장기요양등급신청 의뢰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장기요양등급 신청의 의뢰의 경우 이용자 중 건강상태 악화 등으로 장기요양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장기요양 신청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용자가 거동불편 등으로 직접 신청하기 어렵거나 대리신청을 희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전담사회복지사가 장기요양 신청서를 작성하여, 전담사회복지사 또는 생활지원사가 이용자의 서명을 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공문으로 시군구에 신청 사실을 알리는 절차로 되어있습니다.(지침P.55)

일부 현직 및 퇴직 생활지원사의 장기요양기관 유인행위 사례가 발견됨에 따라, 수행기관에서는 유인행위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해당 절차를 숙지하여 연계 바랍니다.

**Q8. 노인맞춤돌봄시스템에 장기요양등급 이력이 나타나는 경우 종결 해야하나요?**

■ 종결 해야합니다.
현재 노인맞춤돌봄시스템에 기존 장기요양등급 판정대상자의 경우 주황색으로 표시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서비스제공 대상자 중 주황색으로 표시되어 나타난다면 자격대상에서 제외됨으로 종결 해야합니다.
(단, 예외신청자로 시군구(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외)

**Q9. 보안서약서의 서약집행자는 시군구 담당공무원의 서명을 받아야 하나요?**

■ 보안서약서에 서약집행자는 시군구 담당공무원임으로 시군구 담당공무원의 서명을 받아 보관해야 합니다.

**Q10. 특화서비스 대상 및 종사자가 노인맞춤돌봄서비스에 포함되나요?**

■ 포함됩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에 여러서비스 중 대상의 상황(고독사 및 자살 위험이 높은 노인)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가 다른 것일 뿐, 별개의 사업이 아닙니다.(지침P.6)
이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현황 등 조사시 특화대상자도 항상 포함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종사자 또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전담사회복지사는 일반 및 중점 전담사회복지사, 특화서비스 전담사회복지사로 구성되어 있으므로(지침P.77) 수행인력 현황 등 조사시 특화전담사회복지사도 항상 포함하여주시기 바랍니다.

**Q11. 생활지원사 행정전담 또는 특화서비스 전담 역할만 수행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 불가합니다.
지침 내 대상자별 담당 수행인력(생활지원사)를 적절히 배치하도록 되어있으며, '생활지원사의 업무역할'을 고려할 때 행정업무(특화업무보조) 업무만을 담당하는 것은 현행 지침상 어긋난다고 해석됩니다. 또한 행정업무보조(특화전담 포함)의 필요성을 고려할 때, 현재 생활지원사의 업무를 조정하여 행정보조(특화전담 포함) 업무를 맡길 수 있도록 되어있음으로(지침P.90) 부분적으로 적용 가능한 사항으로 해석됩니다.

| Q12. 사후관리자 선정 시 반드시 사례실무회의를 거쳐야 하는가? |
| --- |
| ■ 사례실무회의는 기관에 따라 진행방식이 상이하며, 구체적인 방법이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중간관리자 또는 전담사회복지사 간 사례 관련하여 소통하는 정도를 사례실무회의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
| **Q13. 지자체에서 이용자 현황 요청 시 성비도 포함되어 있으나, 노인맞춤돌봄시스템에서는 성비를 확인할 수 없어 보고에 어려움이 있음. 중앙에서 직접 자료를 추출하여 현황을 공유하거나, 기관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했으면 합니다.** |
| ■ 지자체마다 요청하는 자료양식이 상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양식들을 살펴보고 공통적인 사항들은 표준화시켜 관련 기능 개선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 **Q14. 코로나 확산이 심화됨에 따라 방역기준이 변경되고 있음. 이에, 중앙차원에서 방침이 제시되었으면 합니다.** |
| ■ 현재 복지부에서 코로나 방역 관련 방침을 준비 중인 것으로 공유받음. 복지부를 통해 확인 되는대로 광역지원기관에 내용 공유하겠습니다. |

# Ⅱ. 사업 관련 필수 숙지 및 확인필요 사항

## 1 업무 관련 시스템별 사용자 권한 안내

### 1 노인맞춤돌봄시스템(s-care.mohw.go.kr) 사용자 등록 및 관리

- **(관리운영 책임자)** 수행기관별 대표 1인(승인관리자(기관)) 사용자 등록* 및 해당 기관의 수행인력 사용자 등록 승인

  * 시·도 담당자에게 권한 승인 요청

- **(전담사회복지사)** 사용자 등록 및 해당 기관의 관리운영 책임자(승인관리자)에게 권한 승인 신청

- **퇴사자 관리 철저(승인관리자: 사용자정보관리-승인상태:종결(퇴사 등) 정보 변경)**

### 2 모인우리Web(www.moinuri.com)

1) 기관정보 및 종사자 기초정보 입력 및 수정

2) ①모니터링 답변 ②제출/취합관리 답변 ③공지사항 조회 ④질의응답(노무) ⑤특화서비스

### 3 맞춤돌봄 영상회의시스템(www.mdmeet.kr)

- **(수행기관)** 영상회의 참여(ID : 기관코드, PW : 초기 1234로 설정되어 있음)

### 4 배움터(http://www.1661-2129.or.kr/edu/index.do)

- **(수행기관)** 관리자 로그인 (ID : 기관코드, PW : 최초 로그인시 ID와 동일)

1) ①기관정보관리 ②종사자 등록 ③신규/경력 정보수정 ④입/퇴사 처리 및 수정

2) ①교육신청 ②교육접수자 확인 ③교육이수 확인

# 2 모인우리Web 기관 현황관리

## [기관현황관리]

### ① 매월 5일까지 기관현황 업데이트

- 수행기관 상세현황 변동사항 발생시 수정
- 수행인력 퇴사시 퇴사 일자만 입력 (삭제불가)
- 배정 및 채용인원 수정
- 기타 수정 사항이 없어도 매월 초 또는 말 저장하여 정보 최신화
- 취합 자료는 보건복지부에 현황 보고, 물품 배송 등 자료에 활용할 예정임



수행기관 현황 리스트 — 2022 구분 선택 시도 지역선택 시군구 수행기관 기관선택

| 구분 | 시도 | 시군구 | 수행기관명 | 주소 | 기관 대표전화 | 메인연락처 | 수정일 |
|---|---|---|---|---|---|---|---|
| 운영 | 부산광역시 | +광역수행기관 | 부산광역시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 부산광역시 중구 중구로 71 가톨릭센터 7층 | 051-253-2590 | 051-253-2590 | 2022-03-17 |
| 운영 | 부산광역시 | 강서구 | 강서노인종합복지관 | 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공원로 39 강서노인종합복지관 | 051-972-4851 | 051-972-4851 | 2022-03-08 |
| 운영 | 부산광역시 | 금정구 | 금정구노인복지관 | 부산광역시 금정구 청룡예전로 110(청룡동) | 051-792-7200 | 051-792-7200 | 2022-03-03 |
| 운영 | 부산광역시 | 금정구 | 남광종합사회복지관 |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2349번길 3 | 051-508-1998 | 070-4675-7864 | 2022-01-03 |
| 운영 | 부산광역시 | 금정구 | 금정구종합사회복지관 | 부산광역시 금정구 반송로 490번길 47 | 051-532-0115 | 051-532-0115 | 2022-03-11 |
| 운영 | 부산광역시 | 남구 | 남구노인복지관 | 부산광역시 남구 못골로 97-10(대연동) | 051-628-1291 | 051-628-1291 | 2022-03-02 |
| 운영 | 부산광역시 | 남구 | 용호종합사회복지관 부설 용호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 부산광역시 남구 이기대공원로 7(용호3동) | 051-628-6737 | 070-4550-5740 | 2022-03-03 |
| 운영 | 부산광역시 | 남구 | 청전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 부산광역시 남구 유엔로 124 2층 | 051-622-1226 | 051-622-1226 | 2022-03-16 |
| 운영 | 부산광역시 | 남구 | 남구종합사회복지관 | 부산 남구 동제당로 258 (우암동, 남구종합복지관) | 051-647-3655 | 051-647-3655 | 2022-03-02 |
| 운영 | 부산광역시 | 동구 | 동구노인복지관 | 부산광역시 동구 홍곡중로 5번길 24(수정동) | 051-714-2945 | 051-714-2945 | 2022-03-04 |
| 운영 | 부산광역시 | 동구 | 부산동구자성대노인복지관 | 부산광역시 동구 자성로 140번길 32, 4층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무실 | 051-632-7597 | 051-632-7597 | 2022-03-02 |
| 운영 | 부산광역시 | 동래구 | 동래구노인복지관 |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륜로 207번길 18 | 051-710-6252 | 051-710-6252 | 2022-03-16 |
| 운영 | 부산광역시 | 동래구 | 사직노인복지센터 | 부산광역시 동래구 사직북로63번길 20-7 본관3층 | 051-506-3416 | 070-7163-9566 | 2022-03-14 |
| 운영 | 부산광역시 | 동래구 | 효림원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 부산광역시 동래구 반송로273번길 7, 303호 | 051-532-3888 | 051-523-2322 | 2022-03-02 |
| 운영 | 부산광역시 | 부산진구 | 부산진구노인복지관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대로300번길 6 | 051-808-8090 | 051-808-8090 | 2022-03-02 |
| 운영 | 부산광역시 | 부산진구 | 다사랑복합문화예술회관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대학로 60 | 051-898-1746 | 051-898-1746 | 2022-03-04 |
| 운영 | 부산광역시 | 북구 | 장선종합복지공동체(실버벨노인종합복지관) | 부산광역시 북구 시랑로114번길 45(구포동) | 051-337-5959 | 051-337-5962 | 2022-03-10 |
| 운영 | 부산광역시 | 북구 | 화명종합사회복지관 |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199번길 21(화명동) | 051-338-2233 | 051-338-0161 | 2022-03-01 |
| 운영 | 부산광역시 | 북구 | 청록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대로155번길 86-9 (덕천동, 덕천2지구도시공아파트) | 051-337-0161 | 051-337-0161 | 2022-03-10 |
| 운영 | 부산광역시 | 북구 | 부산삼동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 부산 북구 금곡대로324번길 11 (화명동) | 051-343-5685 | 051-343-5685 | 2022-02-28 |
| 운영 | 부산광역시 | 사상구 | 모라종합사회복지관 | 부산광역시 사상구 모라로 110번길 129 | 051-304-9876 | 051-304-9878 | 2022-03-02 |
| 운영 | 부산광역시 | 사상구 | 사상구종합사회복지관 | 부산광역시 사상구 백양대로 527 2층 맞춤돌봄서비스 | 051-710-2232 | 051-710-2232 | 2022-03-04 |
| 운영 | 부산광역시 | 사상구 | 사상구노인복지관 | 부산광역시 사상구 가야대로196번길 51, 5층 | 051-325-7555 | 051-325-7555 | 2022-01-14 |

| | |
|---|---|
| 모인우리 Web화면 | 수행기관 상세현황 [수정저장]<br>수정일 2022-03-17 16:42 확인필요<br>등록자 부산광역수행기관 |

## 2 기관현황관리 주요 변경사항 안내

- 위수탁구분 변경

| 변경전 |
|---|
| 직영 |
| 노인(종합)복지관 |
| 재가노인복지시설 |
| 기타사회복지시설 |
| 기타 |

➤

| 변경후 |
|---|
| 직영 |
| 위탁 |

- 사업수행연도이력 추가

| 항목 | 내용 | | |
|---|---|---|---|
| 사업수행연도이력<br>(복수선택 가능) | 2020년 ☐ | 2021년 ☐ | 2022년 ☐ |

* 2020년, 2021년, 2022년 사업수행 해당 연도에 체크

**모인우리 Web화면**




**정보 입력 시 주요 유의사항**

| 구분 | 내용 | 예시(비고) | |
|---|---|---|---|
| 위수탁 기간 | 기간 오기입 | 2020-01-01~2022-12-31 (2년) | 위수탁기간 연수 오류 |
| | | 2021-01-01~2024-12-31 (4년) | 위탁기간 3년 이상 오류 |

- 시설유형구분 추가

| | |
|---|---|
| 모인우리<br>Web화면 | 시설유형구분(항목 중복 체크 불가)<br>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br>재가노인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br>기타사회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회복지관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협의회 ○장애인복지시설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시설 ○지역자활센터<br>기타 ○교회 ○노인맞춤돌봄전담시설 ○법인 ○요양시설 ○자원봉사센터 ○학교 ○협동조합 ○기타 |

| 항목 | 내용 | 설명 | 예시 |
|---|---|---|---|
| 노인여가 복지시설 | 노인여가복지시설 | 노인복지법에 근거한 시설 | 노인문화센터, 노인복지센터, 노인복지관, 노인복지회관, 노인종합복지관 |
| 재가노인 복지시설 | 재가노인복지시설 | 노인복지법에 근거한 시설 | 재가노인복지센터, 재가노인복지시설 |
| 기타사회 복지시설 | 노인보호전문기관 | 노인복지법에 근거한 시설 | 노인보호전문기관 |
| | 노인일자리지원기관 | 노인복지법에 근거한 시설 | 노인인력개발기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 노인취업알선기관, 시니어클럽 |
|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근거한 시설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 | 사회복지관 |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한 시설 | 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관 |
| | 사회복지법인 |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한 법인 | 사회복지법인 |
| | 사회복지협의회 |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한 시설 | 사회복지협의회 |
| | 장애인복지시설 |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한 시설 | 장애인재활시설, 장애인요양시설, 장애인이용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보호작업장) |
| |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시설 | 근거 조례의 목적상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한 시설 | 무한돌봄센터, 희망케어, 다목적복지회관 |
| | 지역자활센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한 시설 | 지역자활센터 |
| 기타 | 교회 | 민법에 근거해 설립된 교회 | 교회 |
| | 노인맞춤돌봄전담시설 | - | 노인맞춤돌봄전담시설 |
| | 법인 | 민법에 근거해 설립된 법인 | 학교법인, 종교법인, 사단법인, 재단법인 |
| | 요양시설 | 장기요양기본법에 근거한 시설 | 요양원 |
| | 자원봉사센터 | 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 근거한 시설 | 자원봉사센터 |
| | 학교 | 사립학교법, 고등교육법, 민법에 근거한 시설 | 대학교 산학협력단 |
| | 협동조합 | 협동조합기본법에 근거한 시설 | 사회적협동조합, 생활협동조합, 협동조합 |
| | 기타 | - | 요양병원, 사회서비스원, 시청, 군청 |

- 특화 및 유관서비스 수행여부 추가

| 변경전 |
|---|
| 특화서비스 |
| 장기요양서비스 |
| 재가노인지원서비스 |
| 응급안전안심서비스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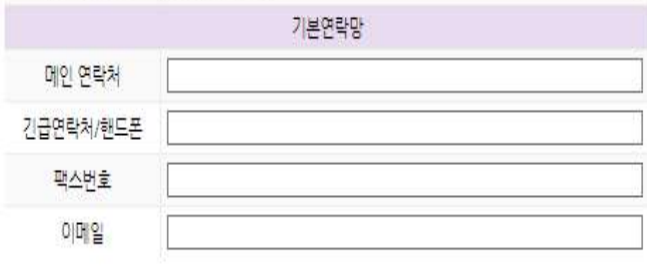
| 변경후 |
|---|
| 특화서비스 |
| 방문요양서비스 |
| 응급안전안심서비스 |
| 재가노인복지서비스 |
| 사회서비스원 소속 |
| 사회서비스형노인일자리 파견 이용 |

| | |
|---|---|
| 모인우리 Web화면 |  |

- 수탁법인번호, 수탁기관 사업자등록번호 기입란 추가

| | |
|---|---|
| 모인우리 Web화면 |  |
| 정보 입력 시 주요 유의사항 | **법인명/기관명/ 기관장명**<br>▪ 위탁서류 및 고유번호증에 표기된 대로 작성<br>▪ 약칭 사용 금지<br><br>**법인번호/수탁기관 사업자등록번호**<br>▪ 고유번호증에 표기된 대로 작성<br><br>**주소/ 배송지 주소**<br>▪ 도로명 주소로 입력<br>▪ **시도 시군구명 정확히 입력**<br>▪ 중간 띄어쓰기 입력 필수<br>▪ **배송지 주소는 후원물품, 책자 등 물품 배송 시 활용될 수 있음** (필요한 경우 층수까지 입력)<br><br>**우편번호**<br>▪ 5자리 우편번호로 입력<br><br>**대표전화**<br>▪ 번호 중간 기호 '-'로 통일 (한글 '—' 입력 금지)<br>▪ **지역번호 입력 필수** |

## ○ 기초정보 및 종사자 정보 입력 시 주요 유의사항 안내

| 모인우리 Web화면 | 정보 입력 시 주요 유의사항 | |
|---|---|---|
|  | **메인 연락처** |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담당 메인연락처(직통 있을 경우 직통번호) 기재 |
| | **긴급 연락처** | ▪ 긴급연락망으로 활용 |
| | **팩스번호** | ▪ 번호 중간 기호 '-'로 통일 |
| | **이메일** |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관련 메일을 수신할 이메일 기재(기관메일 기재) |
|  | **배정인원** | ▪ **확정내시 기준** 배정받은 **수행인력** 인원 |
| | **채용인원** | ▪ **현재 시점** 채용인원 입력 |
| | **배정인원** | ▪ **확정내시 기준** 배정받은 **이용자** 인원(특화대상자 포함) |
| | **제공인원** | ▪ **현재** 서비스 제공인원(특화대상자 포함) |

## <종사자 등록-전담사회복지사/생활지원사>

| 모인우리 Web화면 | 정보 입력 시 주요 유의사항 |
|---|---|
|  | |

| 구분 | 내용 | 예시(비고) | |
|---|---|---|---|
| 생년월일 | 생년월일 오기입 | 2021-06-28 | 입사일과 혼동한 경우 |
| 입·퇴사일 | 입사일 오기입 | 2018-01-01 | 입사일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채용 가능 시점(2019. 12. 1.)이전의 날짜로 등록 불가 |
| | | 2022-11-01 | 입사일을 현 시점 이후의 날짜로 등록한 경우 |
| | | 0000-00-00 | 유효하지 않은 값 기재 |
| | 퇴사일 오기입 | 2022-12-31 | 현시점에 퇴사하지 않은 경우 |
| | | 입사일 2021-01-01 퇴사일 2020-07-30 | 퇴사일이 입사일보다 앞서게 작성된 경우 |
| | | 입사일 2021-04-12 퇴사일 2021-04-12 | **- 당일 근무하지 않고 입사취소한 경우, 종사자 정보 삭제 요망**<br>*** 삭제 필요 시 광역으로 요청**<br>**- 당일 근무 진행한 경우, 정보 유지**<br>- 단순 입력오류의 경우, 정보 수정 요망 |
| | 퇴사자 관리 | **근무종료일을 입력하여 관리 요망**<br>예) 2021-12-31까지 근무한 경우,<br>'퇴사일(근무종료일)' 2021-12-31로 기재 | |

* 채용현황 대비 수행인력 현황(인원) 맞는지 검수 필요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보조금 예산 내 채용된 인원만 입력

# 3 대상자 특이사항 발생 시 보고 체계 안내

## 1 종사자 및 대상자 코로나 일일 현황 제출

- **(주요내용)** 코로나 확진자 및 업무배제자 파악하여 부산시 및 중앙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일일 보고 (2022-독거발송-097(2022.3.8.) 참고)
- **(제출방법)** 모인우리 제출/취합관리-자료취합 내 코로나 일일현황 문항 통해 지정양식(엑셀파일) 제출 (*제출문항 전일 18시 개설)
- **(제출기한)** 매일 17시까지
- **(유의사항)** 종사자 및 이용자 확진된 경우만 작성하여 제출 (접촉에 따른 격리로 재택근무 등 실시하는 경우는 제외)

**코로나 일일 현황 취합 양식**

| 연번 | 시도 | 시군구 | 수행기관명 | 수행기관 코드 | 성명 | 생년월일 | 성별 | 대상구분 | 상태구분(종사자) | 확진일자 | 업무배제일 (종사자) | 업무복귀일 (종사자) | 사망여부 | 비고 |
|---|---|---|---|---|---|---|---|---|---|---|---|---|---|---|
| | | | | | | YYYY-MM-DD 형식으로 기입 | 남/여 | 1= 전담<br>2= 생활지원사<br>3= 대상자 | ※ 종사자만 기입<br>1= 확진자<br>2= 접촉에 따른 격리 (접촉자 중 격리기준에 해당하여 업무배제된 경우) | YYYY-MM-DD 형식으로 기입 | ※ 종사자만 기입<br>YYYY-MM-DD 형식으로 기입 | ※ 종사자만 기입<br>YYYY-MM-DD 형식으로 기입 | YYYY-MM-DD 형식으로 기입 (해당 없을 시, 공란) | |
| 빈칸/오류없이 기입<br>*병합금지<br>*수행기관 코드 오류확인 필수 | | | | | | YYYY-MM-DD 형식으로 기입 | 오류없이 기입 요망<br>*대상구분은 숫자로만 작성 | | 대상구분이 1, 2에 해당하며, 업무배제된 경우만 기입<br>*재택근무 경우 기입하지 않음 | YYYY-MM-DD 형식으로 기입 | 업무배제가 시작된 일자만 기입, YYYY-MM-DD 형식으로 기입 | 실제 업무복귀하는 일자 기입(재택근무, 간접서비스만 제공하는 경우 포함) | YYYY-MM-DD 형식으로 기입 | |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모니터링 보고체계 >

**수행기관** ▶ **광역지원기관** 시·군·구 ▶ **중앙노인돌봄지원기관** 시·도 ▶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 **(수행기관)** 수행인력 및 이용자에 대한 확진자 보고
- **(광역지원기관)** 수행기관별 일일현황 모인우리* 입력
  * 중앙노인돌봄지원기관과 수행기관 간 원활한 업무소통을 위해 구축한 시스템
- **(중앙노인돌봄지원기관)** 현황집계 및 모니터링*
  * 수행인력 자가격리 후 업무복귀 등 특이사항

## 2 대상자 특이사항 보고

- **(수행기관)** 대상자 사망·사고* 발생 시 즉시 사고 경위 파악하여 **특이사항 보고서 작성 및 부산독거센터 제출**

**<특이사항 보고 해당사항>**

| 유형 | 내용 | 보고 해당사항 |
|---|---|---|
| 자살/자살시도 | 자살/자살시도로 수행기관에서 확인한 경우 | 해당<br>**수행기관 확인 즉시**<br>**광역지원기관으로 유선보고** |
| 자연사 | 노환, 질병 등으로 사망한 경우 | 해당<br>(사망 당시 '홀로' 있었던 경우) |
| 사고사 | 화재, 낙상 등 사고로 사망한 경우 | 해당<br>(사망 당시 '홀로' 있었던 경우) |
| 재난·재해 | 온열/한랭질환으로 진단 받은 경우<br>(단순 진단, 입원, 사망) | 해당 |
| 실종* | 보고시점 기준 대상자가 발견되지 않는 경우 | 해당 |
| 코로나 | 코로나 확진,<br>코로나로 병원에서 사망한 경우 | 비해당<br>(모인우리Web 별도 취합) |

* 양식의 '사고유형'에는 비해당 되나 장기 고독사 등으로 발견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보고 필요

- **(유의사항)** 주요내용 위주 기술

| 구분 | 내용 |
|---|---|
| 사고유형 | - (자살/자살시도) 자살 징후 여부 및 이에 대한 수행기관의 개입 이력(특화서비스 연계 등)을 하단 상세내용, 조치현황 등에 작성<br>- (재난·재해) 온열/한랭질환의 병원진단 여부를 상세내용, 조치현황 등에 작성 |
| 발생·발견 일시 | - (발생일시) 이용자가 사고를 당하거나 사망한 일시를 작성<br>※ 병원, 경찰의 조사결과에 따른 사고·사망 추정일시 우선 작성<br>※ 확인이 어려운 경우 가장 최근 생활지원사, 가족, 이웃 등을 통해 안부가 확인된 날짜 작성(ex. 2021.12.10. 추정)<br>- (발견일시) 이용자가 사고를 당하거나 사망한 상태로 발견된 일시를 작성<br>- 발견일시에 발생일시를 뺀 일수가 '3일 이상'인 경우, 신속하게 특이사항 보고 필요 (사전 유선 보고 등)<br>※ 주말 포함하여 3일 이상의 경우도 보고 진행 |
| 최초 발견자 | - 이용자의 사고·사망을 최초로 발견한 사람을 작성<br>※ 최초발견자가 생활지원사인 경우 필요시 종사자 심리·상담 치료비 지원사업 등 안내 요망 |

### 3 언론모니터링 확인 요청 건

- **(주요내용)** 중앙독거센터 언론모니터링 진행 중 부산지역 사건·사고에 대해 해당 지역 수행기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 여부 및 관련 정보 확인 요청 시 협조*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인 경우 대상자 특이사항 보고서 작성 및 제출

**[결과 회신 내용]**

- 언론모니터링 대상자 확인결과

  ex)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이용자(중점/일반),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대상자, 비대상자 (조사결과 기입/상세 내용확인 불가)로 기입

- 비대상자일 경우

  ex) 내용이 파악된 경우 : 기존 현황조사 대상의 경우 조사결과(미선정사유 기입 (서비스거부, 사회관계활성)) 등으로 대상자 기입

- 상세내용 확인 불가의 경우 : (정보제공불가 등) 확인이 불가함, 언론 해당 지역 대상자 일일 안전확인을 통해 대상자가 아님을 확인 등으로 기입하여 회신

## 4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업무연속성계획(BCP) 가이드라인 안내

○ **(주요내용)** 코로나19(오미크론) 확산으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인력이 다수 확진·격리되어 통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상황에 대비하여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수행기관별 업무연속성계획 수립

※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568(2022. 2. 11.)」참조

- 비상조직체계 구성
- 대면서비스 필수 이용자 및 우선순위 결정
- 가용자원 현황 파악
- 감염 예방 등 확산방지 조치 : 예방접종/선제검사/수행인력 확진 시 방안/이용자 확진 시 서비스 방안
- 서비스 지속을 위한 운영방침 마련: 서비스 제공/복무 방안

○ **(협조요청사항)**

- 비상시행단계를 대비하여 **지자체 가이드라인에 따른 수행기관별 업무연속성계획 수립 및 이행**
- 수행기관이 수립한 계획에 대해 수행인력에게 충분한 설명, 안내 필요(서비스 제공 및 복무 방안-재택근무 기준 등)

○ **(현황파악 및 기관별 상황공유)**

| 구분 | 내용 |
|---|---|
| BCP 계획 수립 여부 | - 예) 수립/미수립 |
| | - |
| 현재 이용자 서비스 제공 방법 | - 예) 간접서비스 제공(중점 등 대면서비스 필요 시 제공)/기존서비스 유지 |
| | - |
| 재택근무 시 수행인력 복무관리 방법 | - 예) 수행인력 교육/비대면 회의, 자원개발 등 |
| | - |
| 수행인력 확진 시 이용자 관리 및 업무 복귀 후 복무 방안 | - 예) 업무배제하여 대직자가 이용자 관리/격리해제 후 3일간 재택근무 실시, 대면서비스 업무복귀 |
| | - |

# Ⅲ. 사업 안내사항 (중앙)

## 1 2022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 직무교육 안내

○ 직무교육 안내

- **(교육기간)** '22년 1.3.(월) ~ 12.16.(금)
  * (1~4월) '21년 기존 종사자 및 1분기 신규입사자는 1분기 내 교육 완료
  * (2~4분기) 신규입사자 대상으로 교육 진행
- **(교육대상)**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전 종사자(전담사회복지사, 생활지원사)
- **(교육내용)**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업무 수행을 위한 직무교육
  • 신규자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재직 경력 1년 미만자
  • 경력자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재직 경력 1년 이상자로 직무교육을 1회 이상 이수한 자
- **(교육방법)** '배움터*' 회원가입 후 교육신청 및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활용한 종사자 개별 수강

○ '22년 직무교육 차시

| 교육과정 \ 직군 | | 전담사회복지사 | | 생활지원사 |
|---|---|---|---|---|
| | | 광역, 일반 및 중점 | 특화서비스 | |
| 기초교육 | | 17차시 | 24차시 | 18차시 |
| 심화교육② | 신규자 | 29차시 | 22차시 | 18차시 |
| | 경력자 | 11차시 | 11차시 | 9차시 |
| **소계** | **신규자** | **46차시** | **46차시** | **36차시** |
| | **경력자** | **28차시** | **35차시** | **27차시** |

* **(차시)** 온라인 교육 회기, 1차시는 약 30분에 해당
* **(심화교육)** 신규자 및 경력자별 교육 내용 상이

○ 신규/경력 기준

| | |
|---|---|
| **신규/경력기준** | - **(신규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재직 경력 1년 미만자<br>- **(경력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재직 경력 1년 이상이고, 직무교육 1회 이상 이수한 자<br>• **(기존 재직자(기 배움터 가입자)의 경우)** '22. 7. 1.을 기준으로 경력을 산정<br>* 예) '21. 6월. 입사자의 신규/경력 등록 시, '22. 7. 1. 기준으로 1년 재직경력을 만족하며 직무교육 1회 이상 이수했을 경우 '경력자'로 구분<br>• **('22년 입사자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신규/경력' 등록 |
| **상황별 경력산정** | - **(여러 기관에서 근무한 경우)** 기관별 재직경력을 합산하여 '신규/경력' 등록<br>- **(여러 직군으로 근무한 경우)** '22년 근무하는 직군 기준으로 직군별 재직경력을 합산하여 '신규/경력' 등록<br>- **(근무기간 공백이 있을 경우)** '20~'21년 중 재직기간을 합산하여 '신규/경력' 등록 |

○ '22년 직무교육 교육신청 및 수강기간 (변동사항 있음)

| 회차 | 신청기간 | 수강기간 | 기초교육 | | 심화교육 | |
|---|---|---|---|---|---|---|
| | | | 대상 | 인원 | 대상 | 인원 |
| 6차 | 3.7(월)<br>~3.16(수) | 3.21(월)<br>~4.1(금)* | 전담<br>사회복지사 | 60명 | 전담<br>사회복지사 | (신규) 640명 |
| | | | 생활지원사 | 1,000명 | 생활지원사 | (신규) 3,600명<br>(경력) 3,600명 |
| | | 3.21(월)<br>~4.29(금) | - | - | 전담<br>사회복지사 | (경력) 640명 |
| 7차 | 3.21(월)<br>~3.30(수) | 4.4(월)<br>~4.15(금) | 전담<br>사회복지사 | 40명 | 전담<br>사회복지사 | (신규) 640명 |
| | | | 생활지원사 | 1,000명 | 생활지원사 | (신규) 3,600명<br>(경력) 3,600명 |
| | | 4.4(월)<br>~4.29(금) | - | - | 전담<br>사회복지사 | (경력) 640명 |
| 8차 | **3.21(월)**<br>~4.13(수) | 4.18(월)<br>~4.29(금) | 전담<br>사회복지사 | 40명 | 전담<br>사회복지사 | (신규) 30명<br>(경력) 30명 |
| | | | 생활지원사 | 1,000명 | 생활지원사 | (신규) 3,600명<br>(경력) 3,600명 |

※ '22년 종사자 채용 및 교육신청 현황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전담사회복지사 및 생활지원사 경력자 심화과정 교육은 8차까지만 진행(4.29(금)까지)

○ **(변경내용)** 8차 교육신청 일정 변경을 통해, 실수요인원을 충분히 수용할 예정
(단, 8차 교육수강 기간에는 변동이 없으므로, 기존 일정대로 진행예정)

○ **(참고사항)** 직무교육 접수시작·마감 및 인원조정 일시 안내

| 구분 | 일시 안내 |
|---|---|
| 접수시작 | 매 신청기간 첫날 오전 9시 |
| 접수마감 | 매 신청기간 마지막 날 오후 7시 |
| 접수인원조정 | 매 신청기간 금요일 오전 9시 |

## 2 수행인력 역량강화교육 (중앙주최)

### 1 현장실천 가능 교육

○ **(사업기간)** 4~9월

○ **(진행내용)**

| 구분 | 내용 |
|---|---|
| 전담사회복지사 | 고위험 노인 사례관리 외<br>- 교류분석 상담사 과정, 강점관점 문제해결중심 상담사 과정 등 |
| 생활지원사 | - 어르신 인지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똑똑 생활지원사 과정'<br>- '장수노트' 활용교육<br>- 어르신 디지털 활용능력 향상을 위한 '디지털 튜터 교육과정'<br>- 기타 유관기관 연계 교육 |

### 2 유관기관 연계 교육

○ **(사업기간)** 5~11월

○ **(진행내용)**

| 연계처 | 교육명 | 진행시기 | 방법 |
|---|---|---|---|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 핵심인력역량강화과정 | 5월~7월 | 대면교육 |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 성인지감수성교육 | 5월~10월 | 온라인 교육(집합, 개별) |
| 식품의약품안전처 | 보건 및 영양교육 | 7월~10월 | 온라인 교육(집합, 개별) |
| 경찰청·도로교통공단 | 교통안전교육 | 6월, 10월 | 온라인 교육(집합) |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 통신서비스 활용 및 피해예방교육 | 10월~11월 | 온라인 교육(개별) |

### 3 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 생활교육 콘텐츠

- 장수학교 교육영상(장수노트 100배 활용하기)

| 교육주제 | 건강운동편 | 영양편 | 보건편 | 인지활동편 | 우울예방편 |
|---|---|---|---|---|---|
| 업로드 시기 | 3~4월 | 5~6월 | 7~8월 | 9~10월 | 10~11월 |

## 3 종사자 심리·정서 지원사업 관련 주요안내 (중앙주최)

### 1 예방적 지원사업

○ 마음터치 콜상담

- **(사업대상)** 심리지원 혹은 정확한 노무 정보제공이 필요한 종사자
- **(사업내용)** 업무수행 중 겪을 수 있는 심리 위기상황을 지원하고 부정확한 정보로 혼란을 야기하는 노무 정보에 대하여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현장의 어려움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지원
- **(이용방법)** 콜상담 전화 1661-2129, 내선 3번 종사자 지원

○ 종사자 안전관리 카드뉴스

- **(사업기간)** 22. 1 ~ 12. (*매월 1회 제공)
- **(사업대상)**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 및 종사자
- **(사업내용)** 종사자 지원사업, 안전위협상황 예방 및 대응방안 관련 정보가 담긴 카드뉴스
- **(이용방법)**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카카오톡 채널추가
  (카카오톡 채널 링크: http://pf.kakao.com/_EzRJK)

○ 종사자 안전관리 실무매뉴얼 리뉴얼

- 산업안전보건법 관계법령 변경사항, 수행기관의 조치사항 등 사례반영

### 2 직접지원 사업

○ 심리상담치료비 지원사업

- **(사업기간)** 22.3. ~ 12. (*세부내용 별도 안내 예정)
- **(지원대상)** 업무수행 중 외상경험(이용자 사망 등)으로 심리상담치료(병의원) 필요종사자
- **(지원범위)** 종사자 1인 최대 80만원 지원(수행기관에서 가입한 보험 보상액 포함)

  * 수행기관별 가입된 상해보험을 활용하여 종사자에게 실효성 있는 심리상담치료 지원

| 상담기관 | 지원내용 | 기타사항 |
|---|---|---|
| 정신건강의학과<br>병·의원 | ◦심리상담 **의료비 지원**<br>- 1인 최대 80만원<br>(수행기관 보험보상액 포함) | ◦**(종사자)** 병·의원 심리상담 진행<br>- 지역 내 병·의원에서 개별 심리상담 치료 후 중앙(센터)으로 의료비 지원신청<br><br>◦**(중앙)** 서류검토 후 심리상담 의료비 지원(종사자 개인계좌로 지급) |
| 허그맘허그인<br>심리상담센터<br>(전국 15개시도 68개소) | ◦심리상담 **비용 감면**<br>- 심리상담 20% 감면<br>- 심리검사 10% 감면 | ◦**(종사자)** 심리상담센터에 심리상담 진행<br>- 지역 인근 심리상담센터에서 온·오프라인 심리상담 진행 후 비용 결제시 즉시 감면 |

**<한국사회복지공제회 노인맞춤돌봄종합공제 '정신적피해 의료지원비' 보장내용>**

| 보장내용 | 보상한도 |
|---|---|
| 업무 중 발생한 정신적 피해로 정신과 전문의로부터 7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소견)을 받거나 실제 치료를 받은 경우<br>*약물치료, 심리치료 등 직접적인 치료 외에도 안정치료 등의 간접적인 진단(소견)도 인정 | 사고건당<br>30만원 |

○ 지역별 힐링 강연·프로그램 지원

- **(사업기간)** 연중 4회(상하반기 각2회)진행 (*세부내용 별도 안내 예정)
- **(사업대상)** 업무수행 중 발생되는 다양한 스트레스, 소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종사자
- **(사업내용)** 해당 분야에 지식과 경험을 겸비한 전문가 온오프라인 강연을 통해 종사자의 심리적 회복 탄력성 향상 도모 등

## 4 2022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노무 자문 지원사업 안내

○ **(지원기간)** 1-12월(12개월)

○ **(지원대상)**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

○ **(지원내용)** 노무 분야 무료 자문 (*직접적인 소송과 신고는 제외함)

○ **(지원방법)** 시스템 전자문서(서면) 자문(모인우리), 전화·방문*

* (전화) 필요시 노무사가 진행, (방문) 별도 안내




① **확인 및 승인 기준일: 1일 1회 (중앙 및 광역)**

② (평일기준) 1일/1회 승인, 최종승인일로부터 자문의견 10일 소요될 수 있으며, 자문사례에 따라 더 경과 될 수 있음

* 개인정보 포함, 노무분야 외 중복사례, 자문의도 파악 불가 등의 자문요청은 반려

○ **(요청서작성)**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관련 노무 자문요청 사항을 개인정보* 취급에 유의하여 상세히 작성

* 이름, 사원번호 등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

※ 요청서에 작성된 내용(수행기관 정보 제외)은 공유됨으로 내용 작성에 각별한 주의 필요

○ **(자문범위)** 노동관계 법령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자문,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의 노무 현안에 관한 자문 등

○ **(미지원 범위)** 직접적인 소송과 신고, 노무 외 지침(예산사용 등), 노무 컨설팅, 출장, 현장교육 등 수행기관·종사자 개별사안*은 포함하지 않음

* (예) 종사자 임금계산 등

○ **(이용방법) 모인우리Web**

- (자문요청) 질의응답 - 노무질의문의 - 자문요청 등록

* 해당 수행기관의 자문요청 등록 및 결과(승인/반려/답변) 확인

- (자문공유) 질의응답 - 노무질의문의 - 자문의견서 조회

* 전체기관의 노무질의 및 자문의견 조회

** 내용 검색을 통한 유사 자문 건 확인 후 자문요청 접수

○ **(기타사항)** 수행기관의 개별적인 근로조건 결정이나 해석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문의하여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 5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노무자문 교육 및 회의 안내

○ **(사업목적)** 현장 교육을 통한 실질적 노무관리자(기관장 또는 인사관리자)의 노무 이해도 증진 및 현장의견 청취를 통한 지역 내 노무 현안을 파악하여 원활한 사업 운영을 지원하고자 함.

○ **(교육대상)**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 노무관리자

○ **(교육내용)** 노무관리자 교육, 수행기관 노무관리 등 애로사항 청취, 예상 노무 이슈 안내 및 질의응답 (※관련 교육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 **(회의내용)** 노무자문지원사업 관리 및 현황파악, 질의 및 답변 등

○ **(진행방법)** 대면교육 및 회의 (*상황에 따라 비대면으로 변경될 수 있음)

○ **(진행일정)** 2022. 4. 15.(금) 15:00~18:00

○ **(진행장소)** 가톨릭센터 회의실 진행예정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협조사항)** 교육 참석 및 질의 의견서 제출

## 6 조선일보와 함께하는 '독거노인 신문 안부안심사업'

○ **(사업목적)** 사회적 관계망이 결여된 사각지대 취약노인의 정기적인 안부확인을 실시함으로써 사회적 안전망 확보
○ **(사업기간)** 2021. 10 ~ 2022. 08.(11개월)
○ **(사업내용)** 신문지원 및 독거노인 가정의 신문 회수 상태를 통한 안부확인
○ **(참여기관)** 강서노인종합복지관 외 33개 수행기관
○ **(지원내용)** 조선일보 신문 지원 **(※매주 월~토 지원 / 월 15,000원 상당)**
○ **(요청사항)** 대상자 관리 및 변동사항 시 모인우리 시스템을 통한 자료 제출
* 격주 수요일 제출
* 대상자 개인정보가 담겨있으므로 반드시 공문과 함께 제출
* 2022-독거발송-066(2022.2.18.) 관련 공문 참조
* 미배달 사유 및 단기간 중단요청에 대한 문의는 조선일보 독자센터(1577-8585)로 문의
○ **(기타사항)** 현재 진행중인 사업으로 신규신청 불가

## 7 한겨레신문사와 함께하는 '독거노인 안부 확인사업'

○ **(사업목적)** 사회적 관계망이 결여된 사각지대 취약노인의 정기적인 안부확인을 실시함으로써 사회적 안전망 확보
○ **(사업기간)** 2021. 6. ~ 2022. 6.(13개월)
○ **(사업내용)** 신문지원 및 독거노인 가정의 신문 회수 상태를 통한 안부확인
○ **(참여기관)** 금정구노인복지관 외 12개 수행기관
○ **(지원내용)** 한겨레신문 지원 **(※매주 월~토 지원 / 월 18,000원 상당)**
○ **(요청사항)** 대상자 관리 및 변동사항 시 모인우리 시스템을 통한 자료 제출
* 매주 수요일 제출
* 대상자 종결 후 교체 대상자 제출
* 대상자 개인정보가 담겨있으므로 반드시 공문과 함께 제출
* 미배달 관련 문의는 한겨레신문사 고객센터(1566-9595)로 문의
○ **(기타사항)** 현재 진행중인 사업으로 신규신청 불가

## 8 사랑잇는 전화

○ **(사업기간)** 수시

○ **(사업내용)**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의 임직원 자원봉사자(나눔천사)가 독거노인에게 안부전화

○ **(지원대상)**

①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일반 및 중점대상자 중 상시적인 안전확인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

②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후관리 대상자

③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기 대상자

○ **(지원내용)** 안부전화 및 대상자 후원물품 지원 등

○ **(지원방법)**

① 사랑잇는전화 시스템 접속 및 로그인

② 사랑잇기대상자 관리> 세부사항 등록 (처리사항·인적사항·특이사항)

○ **(기타사항)** 상시 진행중인 사업으로 필요시 신청가능(2022-독거발송-101(2022.3.11.) 참조)

## 9 한국사회복지공제회 '노인맞춤돌봄종합공제' 보장담보 추가 안내

○ 특별약관 '업무 중 자동차보험료 할증지원금 지원'

- **(주요내용)** 업무수행 중 자동차 사고로 대인 담보 또는 대물 담보에서 보험금이 지급되었을**시 1사고당 20만원 지원금 지급**
- **(공제금 청구 및 문의처)** 한국사회복지공제회 Tel. 02-3775-8832

**<참고> 업무 중 자동차보험료 할증지원금 특별약관**

**제1조 (공제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① 공제회는 피공제자(공제대상자)가 공제기간 동안 노인맞춤돌봄 업무로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자동차 사고로 타인의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에 상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에 손상을 입히는 사고를 야기하여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I, II) 담보 또는 대물배상 담보에서 보험금이 지급된 경우 1사고당 이 특별약관의 공제가입금액을 업무중 자동차 보험료 할증지원금으로 지급합니다.

②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공제자(공제대상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제2조 (공제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피공제자(공제대상자)가 동일한 사고로 인하여 자동차보험의 2종류 이상 담보에서 보험금이 지급된 경우에도 1회로 인정하여 지급합니다. 이 특별약관의 공제가입금액은 20만원입니다.

**제3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 Ⅳ. 사업 안내사항 (부산광역)

## 1 수행기관 현장모니터링

○ **(사업기간)** 기관별 연1회 실시 (*별도안내)
○ **(사업대상)**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 44곳
○ **(사업내용)**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운영 관리, 종사자 애로사항 수렴 등 종합적인 운영 실태 파악

## 2 수행기관 서비스 모니터링

○ **(사업기간)** 3월~12월(구군별 연1회)
○ **(사업대상)** 16구군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이용자 32명
○ **(사업내용)** 사업안내에 따라 이용자 선정 적정성 및 서비스 제공 현황 파악을 통한 서비스 관리 지원
○ **(진행방법)** 시스템 무작위 추출을 통한 구군별 이용자 2명에게 현장 방문하여 선정 적정성, 제공계획 수립 및 서비스 제공 실지 확인 (*상황에 따라 진행방법은 비대면으로 진행될 수 있음)

## 3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실무협의체

**1 수행기관 정례회의**

- **(사업기간)** 분기 1회
- **(사업대상)**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 44곳
- **(진행방법)** 대면회의 (*상황에 따라 비대면으로 진행될 수 있음)

**2 지역구 단위 실무협의체**

- **(사업기간)** 상/하반기 각 1회 예정
- **(사업대상)** 지역구 단위 실무협의체 광역지원기관 개입 필요 및 희망하는 2-3곳 구군 및 해당 구군 수행기관(수행인력)
- **(사업내용)** 지역 내 상시적 협의 체계 구축을 위해 지자체 및 수행기관 등 맞춤돌봄서비스 실무협의체 회의구조 설계 및 지원
- **(진행방법)** 대면회의

### 3 TF회의

- **(사업기간)** 필요시
- **(사업대상)** 주요 현안에 관심 있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중간관리자 또는 전담사회복지사
- **(사업내용)** 주요 현안에 따른 협의체계 구축
- **(진행방법)** 대면회의

### 4 합동간담회(워크숍)

- **(사업기간)** 9월 예정
- **(사업대상)** 부산시, 16구군 담당 공무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 44곳, 광역지원기관
- **(사업내용)**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 및 추진체계별 역할 안내, 부산시 현황 공유 및 현안 논의 등
- **(진행방법)** 대면회의

## 4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인력 역량강화교육 (부산광역주최)

**※ 상황에 따라 교육과목 및 교육일정 달라질 수 있음**

### 1 역량강화교육

○ 전담사회복지사

- **(사업기간)** 총 3회기 (6월, 8월, 9월 예정)
- **(교육인원)** 회기별 기관당 1-2명
- **(진행방법)** 대면교육
- **(교육과목)** 해결중심 사례관리,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회계, 지역내 자원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 등

○ 선임생활지원사

- **(사업기간)** 총 2회기 (6-7월 예정)
- **(교육인원)** 회기별 기관당 1-2명
- **(진행방법)** 대면교육
- **(교육과목)** 사례관리 심화, 지역내 자원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 등

○ 생활지원사

- **(사업기간)** 총 3회기 (6-9월 예정)
- **(교육인원)** 회기별 기관당 1-2명
- **(진행방법)** 대면교육
- **(교육과목)** 사례관리 기초, 노인의 심리이해 및 상담기법

### 2 힐링워크샵

- **(사업기간)** 총 6회기 (7-10월 예정)
- **(교육인원)** 회기별 상이
- **(진행방법)** 비/대면 교육, 현장체험 등 회기별 상이
- **(교육과목)** CS교육, 힐링프로그램(컬러테라피, 미술심리상담, MBTI 성격유형 검사, 숲체험 등)

## 5 특화서비스 수행기관 지원사업

### 1 이용자 모니터링

- **(사업기간)** 3-12월(10개월)
- **(사업내용)** 특화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등 서비스 현황 실태조사
- **(진행방법)** 이용자 무작위 선정 후 대면(또는 비대면) 모니터링 실시
- **(협조사항)** 대상자별 주소확인 및 서비스제공계획서 제출

### 2 수행기관 모니터링

- **(사업기간)** 4-12월(9개월)
- **(사업내용)** 특화서비스 추진 현황 및 애로사항 파악
- **(진행방법)** 수행기관 현장방문
- **(협조사항)** 기관 모니터링 체크리스트 내용 관련 서류준비

### 3 역량강화교육

○ 비대면 교육

- **(사업기간)** 총 5회기(상/하반기 나누어 진행)
- **(사업대상)** 특화서비스 신규기관 또는 신규담당자
- **(사업내용)** 특화서비스 사업 및 유의사항 등 안내
- **(협조사항)** 교육참석

○ 대면 교육

- **(사업기간)** 총 2회기(상/하반기)
- **(사업대상)** 특화서비스 담당자 30명
- **(사업내용)** 사례관리(기초/심화), 프로그램 계획 및 작성방법, 지역내 자원연계 및 협력 방법 등 교육
- **(협조사항)** 교육참석 및 교육 주제 의견제시

### 4 실무자간담회

- **(진행시기)** 상·하반기 실시 (4월/10월 예정)
- **(사업내용)** 특화서비스사업 안내 및 현안논의
- **(진행방법)** 대면회의 (*상황에 따라 비대면으로 변경될 수 있음)
- **(협조사항)** 간담회 참석 및 질의 의견 제출

## 6 나눔활성화사업 (부산시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주최)

**※ 상황에 따라 일정 및 진행방법 달라질 수 있음**

### 1 부산노인돌봄나눔대회

○ 독거노인보호 유공

- **(사업기간)** 10-11월 중
- **(사업대상)** 돌봄사업(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수행인력 및 수행기관, 후원자, 자원봉사자
- **(사업내용)** 돌봄사업 유공자 추천 및 포상

○ 부산노인돌봄나눔대회

- **(사업기간)** 11-12월 중
- **(사업대상)** 돌봄사업(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수행인력 및 수행기관, 후원자, 자원봉사자 총 600명
- **(사업내용)** 우수유공 포상 및 노인돌봄과 나눔문화 활성화를 위한 토크콘서트 등

### 2 독거노인 인식개선전

○ 인식개선전 공모

- **(사업기간)** 5~6월 예정
- **(사업대상)** 시민 누구나(개인 또는 단체)
- **(사업내용)** 독거노인 인식개선에 관련된 주제를 담은 미디어(영상), 산문(N행시, 슬로건) 부문으로 공모 실시
- **(진행방법)** 우편, 이메일 등을 통해 접수 후 심사, 시상금 지급

○ 인식개선전 전시

- **(사업기간)** 7월 예정
- **(사업대상)** 시민 누구나
- **(사업내용)** 공모를 통해 당선된 작품을 전시, 이벤트 등 실시

## 7 서비스지원사업 (부산시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주최)

### 1 카네이션나눔사업

- **(사업기간)** 4-5월 중
- **(사업대상)** 16구군 취약노인 13,000명(독거노인 우선)
- **(사업내용)** 어버이날 맞이 취약노인 정서지원을 위한 카네이션 나눔

### 2 혹서기·혹한기 지원사업

○ 혹서기 대비 물품 지원사업

- **(사업기간)** 7월 예정
- **(사업대상)** 16구군 취약노인 4,000명
- **(사업내용)** 폭염에 취약한 노인에게 냉방용품 등 지원
  (*필요 물품 사전 수요조사 실시 후 물품선정 예정)

○ 혹한기 대비 물품 지원사업

- **(사업기간)** 12월 예정
- **(사업대상)** 16구군 취약노인 2,500명
- **(사업내용)** 한파에 취약한 노인에게 난방용품 등 지원
  (*필요 물품 사전 수요조사 실시 후 물품선정 예정)

## 8 안부안심콜서비스 (부산시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주최)

- **(사업기간)** 연중
- **(사업내용)** 전문상담사가 독거노인에게 주 1회 안부전화 및 전화상담
- **(지원대상)**
  ① 안부안심콜서비스 사전 등록 이용자
  ②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미신청자 및 대기자 중 희망자
  ③ 장기요양서비스 신청자 및 판정 대기자
  ④ 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대상자 중 희망자
- **(지원방법)**
  ① 별도 신청서 작성 (부산시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게시판-공지사항 참조)
  ② 신청서 부산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이메일(senior051@daum.net) 또는 팩스(051-462-2590) 제출
- **(유의사항)** 서비스 제공 수단이 전화로 난청의 경우 서비스 신청 및 이용 불가하며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이용자는 신청 불가함